



토끼정(停)
TOKKIJUNG PROJECT

『토끼정』 정보공개서

(주)에스앤에스코퍼레이션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에스앤에스코퍼레이션

< 주의 사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및 최종 등록일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16035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6-04-1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1-03

『토끼정』 가맹본부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대구 수성구 수성로 354, 3층(수성동2가)		
전화번호	010-6303-0105	팩스번호	053-791-4950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부	담당자 전화번호	010-6303-0105
홈페이지	www.snsbrand.co.kr	담당자 이메일	khm@snsbrand.co.kr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해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별첨 서류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주)에스앤에스코퍼레이션	영업표지	토끼정 외 1	
주 소	대구 수성구 수성로 354, 3층(수성동2가)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5.11.02	2015.11.04	이성민	010-6303-0105	053-791-4950
법인등록번호	170111-0584096	사업자등록번호	718-87-00209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임원)	이성민/ (주)에스앤에스 코퍼레이션	토끼정 외1	대구 수성구 수성로 354, 3층(수성동2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성민	010-6303-0105	053-791-495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임원)	이창희/ (주)에스앤에스 코퍼레이션	토끼정 외1	대구 수성구 수성로 354, 3층(수성동2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성민	010-6303-0105	053-791-495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대표이사)	이성민/ (주)에스앤에스 컴퍼니	서가엔쿱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354, 5층(상동, 수성동 2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성민	010-6303-0105	053-791-4950
		법인등록번호	170111-0425216	사업자등록번호	502-86-1010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대표이사)	이성민/ (주)에스앤에스숨	숨쉬는 순두부	대구 수성구 수성로 354, 4층 404호(상동, 수성동2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법인등록번호	170111-0697641	사업자등록번호	614-86-0116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대표이사)	이성민/ (주)에스앤에스 천하	천하대창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354, 4층 402호(수성동2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법인등록번호	170111-0784795	사업자등록번호	267-87-01864

* 위 표와 같이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표지는 총 5개로 법인별로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에스앤에스 숨 - [숨쉬는순두부]
2. (주)에스앤에스컴퍼니 - [서가앤쿡]
3. (주)에스앤에스코퍼레이션 - [토끼정], [미즈컨테이너]
4. (주)에스앤에스천하 - [천하대창군]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인수·합병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토끼정	토끼정	2015.11.04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길 32	이창희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토끼정』	-
상 호	『토끼정』 _____ 점	-
상표(서비스표)		등록 4103130320000 2015.02.13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1,235,135	6,536,572	4,698,563	9,270,816	458,245	114,002
2022년	11,828,045	6,467,840	5,360,205	10,836,556	839,910	664,806
2023년	11,349,037	5,427,926	5,921,110	11,121,735	890,740	560,905

☞ 위 재무상황의 근거는 별첨의 재무제표입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 위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 관련 임원 >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재직 회사 및 직위	담당 업무
이성민	대표이사	2015.11.02. ~ 현재	(주)에스앤에스코퍼레이션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11.06.21. ~ 현재	(주)에스앤에스컴퍼니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15.09.08. ~ 현재	(주)에스앤에스텀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18.10.04. ~ 현재	(주)에스앤에스숨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18.11.02. ~ 현재	(주)에스앤에스프레쉬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20.08.25. ~ 현재	(주)에스앤에스천하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이창희	사내이사	2015.11.02 ~ 현재	(주)에스앤에스코퍼레이션 사내이사	회사업무 관리

7.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2023년도) 말 현재 임직원 수

시점	임원 수(명)		직원 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	1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관계	상호	영업표지	구분	사업기간	사업내용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대표이사	(주)에스앤에스컴퍼니	서 가 앤 쿡 SEOGA&COOK	가맹사업 경영	2011.04.01. ~ 현재	서가앤쿡(등록번호 : 20110600026)이라는 이탈리안 퓨전 음식 프랜차이즈
대표이사	(주)에스앤에스컴퍼니	치킨 온더 와플	가맹사업 경영	2021.11.12.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4.03 (자진취소)	치킨온더와플(등록번호 : 20214789)이라는 와플치킨 프랜차이즈
대표이사	(주)에스앤에스퍼م	플래쉬파스타	가맹사업 경영	2021.11.12.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4.03 (자진취소)	플래쉬파스타(등록번호 : 20214791)이라는 파스타 프랜차이즈
대표이사	(주)에스앤에스코퍼레이션	미즈컨테이너	가맹사업 경영	2019.09.25.~ 현재	미즈컨테이너(등록번호 : 20190657)이라는 서양식/바비큐 등 퓨전음식 프랜차이즈
대표이사	(주)에스앤에스숨	숨쉬는 순두부	가맹사업 경영	2019.03.20. ~ 현재	숨쉬는순두부(등록번호 : 20190623)이라는 순두부 프랜차이즈

대표이사	(주)에스앤에스 천하	천하대창군	가맹사업 경영	2020.12.15. ~ 현재	천하대창군(등록번호 : 20210687)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 (곱창 등)사업 경영
------	----------------	-------	------------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상표(서비스표)	권리 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TOKKIJUNG PROJECT 토끼정(停)	43류	등록 2015.02.13	등록 4103130320000	이창희	2025.02.13

※ 상기 상표권은 등록권리자인 당사의 사내이사 이창희로부터 그 만료기일까지 사용을 허락 받았습니다.

※ 귀하가 관계기관에 등록된 당사의 특허, 상표,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토끼정』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5년 10월 01일(1호점 오픈일)

※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6년 03월 01일

* 당사는 2015년 11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 토끼정 1호점 매장은 법인사업자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운영 중이었던 매장임을 밝힙니다.

2. 『토끼정』 연혁

☞ 『토끼정』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토끼정	토끼정	이창희	2015.10.01. ~ 2015.11.03.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길 32
(주)토끼정	토끼정	이성민	2015.11.04. ~ 2017.10.11	대구 수성구 지범로 89, 지하1층(지산동)
(주)토끼정	토끼정	이성민	2017.10.12. ~ 2018.01.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354, 3층 (수성동2가)
(주)에스앤에스 코퍼레이션	토끼정	이성민	2018.01.16. ~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354, 3층 (수성동2가)

3. 『토끼정』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토끼정	대분류
일식		일본 가정식

4.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 지방 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8	20	8	23	16	7	21	14	7
서울	9	5	4	9	5	4	7	4	3
부산	3	2	1	3	2	1	3	2	1
대구	2	2	-	2	2	-	2	2	-
인천	2	2	-	1	1	-	-	-	-
광주	-	-	-	-	-	-	-	-	-
대전	1	1	-	-	-	-	-	-	-
울산	1	-	1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8	7	1	6	5	1	7	5	2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2	1	1	2	1	1	2	1	1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당사의 직영점 및 가맹점의 자세한 현황은 당사에 비치되어 있는 점포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의 사항이 있는 가맹점의 수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23	-	-	3	-	20
2022년	20	-	-	4	-	16
2023년	16	1	-	3	-	14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의 총 수

구분	상호	영업표지	업종	사업내용
대표이사	(주)에스앤에스코퍼레이션	미즈컨테이너	서양식	서양식 프랜차이즈 20190657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 직영점 수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직영점	가맹점	직영점	가맹점	직영점	가맹점
대표이사	(주)에스앤에스코퍼레이션 / 이성민	미즈컨테이너	2	3	1	3	-	2

구분	상호	영업표지	업종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주)에스앤에스컴퍼니	서가앤쿡 SEOGA&COOK	서양식 / 이탈리안 퓨전음식	이탈리안 퓨전음식 프랜차이즈 20110600026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 직영점 수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직영점	가맹점	직영점	가맹점	직영점	가맹점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주)에스앤에스컴퍼니 / 이성민	서가앤쿡 SEOGA&COOK	10	75	7	64	7	48

구분	상호	영업표지	업종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주)에스앤에스숨	숨쉬는순두부	한식 / 순두부	한식 순두부 프랜차이즈 20190623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 직영점 수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직영점	가맹점	직영점	가맹점	직영점	가맹점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주)에스앤에스숨 / 이성민	숨쉬는 순두부	3	8	2	9	2	9

구분	상호	영업표지	업종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주)에스앤에스천하	천하대창군	한식 / 대창, 곱창, 특양구이 등	한식(곱창 등) 프랜차이즈 20210687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 직영점 수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주)에스앤에스천하 / 이성민	천하대창군	직영점	가맹점	직영점	가맹점
			-	3	-	3

7. 직전 사업연도(2023년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위: 개/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 당	상한	면적 3.3㎡ 당	하한	면적 3.3㎡ 당	
전체	14	982,793	15,145	2,108,798	96,888	144,246	1,866	14곳 산정
서울	4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부산	2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대구	2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5	880,038	19,569	1,325,664	96,888	220,045	11,825	5곳 산정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1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맹점 총 16곳의 매출액(POS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가맹점은 가맹점사업자가 알려준 매출액)을 근거자료로 2023년 연간평균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토끼정]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토끼정』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14	1,974일

* 위 평균영업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로 나눈 기간입니다.

9.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주소,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지역총판) 및 가맹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 직전 사업연도(2023년도) 말 『토끼정』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수단은 구분이 어려워 총액만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토끼정』 외 [미즈컨테이너]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사업별로 구분하기 어려워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기재하며 해당 가맹사업 외의 광고비 및 판촉비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15	-	-	-
광고	소계	연중	15	-	-	
판촉	소계	연중	해당없음	-	-	

11.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 당사가 정한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의 상호 및 담당지점	예치기관의 소재지	예치기관의 전화번호
국민은행 황금네거리지점	대구 수성구 두산동 113 sk리더스뷰	053-767-8900

2) 가맹금 예치절차

☞ 귀하는 [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중 가까운 곳에 신분증 및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해당 영업점에서 가맹금 입금용 에스크로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는 안내받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귀하는 가맹금 예치 제도 관련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토끼정』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별도 구입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

☞ 당사의 최초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16,500	-	-	-	(예외조건)
가맹비	11,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개점 전 교육비	5,5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개점 전 교육 미 이수시 반환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에서 수령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반환 조건
합계	5,000	-	-	-
계약이행보증금	5,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합계	21,500	-
가맹비	11,000	부가세포함
개점 전 교육비	5,500	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	5,000	부가세없음

4) 최초 가맹금 외에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정해진 기간을 넘길 때 추가로 생기는 금융비용 등 그 밖의 필요비용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일반매장형]과 [푸드코트형]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일반매장형]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당 금액	지급 기한	비고
합계	-	151,300	3,785.5	-	132㎡(약40평)기준
인테리어	점주자율	68,200	1,705	개별 협의	- 시세 및 경영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설비 및 기기	점주자율	33,000	825		
집기 및 비품	점주자율	16,500	412		
의탁자 등	점주자율	11,000	275		
간판, 사인	점주자율	6,600	165		
음향/DP	점주자율	5,500	-		
POS	(협력업체)	3,300	-		
홍보인쇄물	(협력업체)	1,500	-		
유니폼 등	(협력업체)	200	-		
최초 공급상품 (식자재 및	(협력업체)	5,500	-		

원부재료 등)					
---------	--	--	--	--	--

[푸드코트형]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당 금액	지급 기한	비고
합계	-	115,600	9,634	-	39.6㎡(약12평)기준
인테리어	점주자율	46,200	3,850		- 시세 및 경영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설비 및 기기	점주자율	33,000	2,750		
집기 및 비품	점주자율	16,500	1,375		
의탁자	점주자율	3,300	275		
간판, 사인	점주자율	6,600	550		
POS	(협력업체)	3,300	-		
홍보인쇄물	(협력업체)	1,000	-		
유니폼 등	(협력업체)	200	-		
최초 공급상품 (식자재 및 원부재료 등)	(협력업체)	5,500	-		

※ 위 두 표(일반매장형, 푸드코트형)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일반매장형, 푸드코트형 공통사항)

(1) 관리 감독 준수 : 가맹점사업자는 인테리어, 간판 등 점포시설 시공(점포환경개선, 점포이전 시공 등

포함)할 때 인테리어, 간판 등의 점포시설은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당사는 직원을 파견하여 이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파견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당사의 브랜드 디자인 설계 및 검수 대가로 평당 이십이만원 (₩220,000 / VAT포함)을 공사 착수 전일까지 당사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2) 필수 구입 내역 : 초도물품 일체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은 자체 구입 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그 밖의 닥트공사, 가스/소방공사, 냉난방공사, 철거공사(필요시) 등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장에 따라 상이)

※※※ 위 금액은 오픈하고자 하는 매장 환경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시 매장실측 후 정확한 금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 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사 조언 요청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및 상권분석 →분석 및 결과 타당성 유무 통지→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입지 선정 조언→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가맹점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위 내역 중 별도시공 내역은 귀하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가맹금 등 분납 제도

☞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리모델링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시스템 유지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열티)	가맹본부	월 총매출액 (공급대가)의 2.2% (VAT 포함)	매월 10일	반환 안됨	소멸성 비용	매월 발생

광고·판촉	가맹본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고	명세서 수령 후 7일 이내	반환 안됨	광고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자 부담				상황에 따라 협의
점포환경 개선비용	-	가맹본부가 요구시 : Ⅷ.1 외 비용 부담	-	-	-	가맹점사업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협력업체)	일반채널 5.5%	익월 20일	반환 안됨	소멸성 비용	상품권 매출금액 기준
		카카오 7.7%				
	(협력업체)	일반채널 5.5%				
		카카오채널 7.7%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금전 지급 기일 경과시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2023년도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가맹본부가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감독항목	내용	시기	비고
매장운영 전반감독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물품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 상태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감독	수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고관리 회계처리	공급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감독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1. 갱신 가맹비 [최초 가맹계약기간 2년 종료 후 갱신 하는 경우 (최초 가맹계약기간 포함 10년까지)]	2,200	계약종료일 3개월 이전	계약 종료일 1개월 이전에 갱신 철회한 경우	가맹점 운영권 부여 등에 대한 대가	최초 가맹계약 기간 2년 종료후 매 갱신할 때마다 갱신가입비 발생 다만, 귀하가 당사로부터 해당 계약기간동안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 갱신가입비 면제
2. 갱신 가맹비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 만료 후 갱신 하는 경우)	5,500	계약종료일 3개월 이전	계약 종료일 1개월 이전에 갱신 철회한 경우	가맹점 운영권 부여 등에 대한 대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 만료 후 갱신하는 경우
3. 갱신 가맹비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 만료 후 갱신 하고 추후 5년 마다 갱신 가맹비)	5,500	계약종료일 3개월 이전	계약 종료일 1개월 이전에 갱신 철회한 경우	가맹점 운영권 부여 등에 대한 대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 만료 후 갱신하고 5년마다 갱신가맹비 발생
<p>* 기존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이 재계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재계약하는 시점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p> <p>** 당사는 위 지급기한을 상호 협의 또는 상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지급기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p>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

- 1) 귀하가 운영하는 『토끼정』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2)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 초래된 개점 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기존 토끼정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의 교육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교육비	5,500	양도인의 가맹계약의 잔여기간을 부여함
계약이행보증금	5,000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1)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시스템이 반영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비품·집기 및 당사의 모든 영업비밀자료(매뉴얼 등)등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원상회복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철거·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는 철거·원상회복에 관한 확인서를 통하여 철거·원상회복이 완료

되었음을 확인하며, 그로부터 14일 이내 전 항에 의하여 정산되고 되고 남은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 5)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할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품의 품목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내역은 가맹계약기간중에 당사의 경영방침, 메뉴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라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품목과 거래상대방·공급가격·공급규격·거래형태·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등이 상이해질 수 있으며 귀하는 이에 따라야 하며 변경된 공급품목을 반드시 지정된 사업자에게 공급받아야 함을 알립니다.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별첨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토끼정]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 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 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아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판매상품명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4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5차 : 가맹계약 해지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신상품 개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에 대하여 고객(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한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 · 용역 또는 당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 및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의 전용 상품 및 필수거래 상품을 대체하는 타 제품 일체	판매 금지	4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5차 : 가맹계약 해지
미성년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매장형]

(2024.04.01.기준)

상품 및 서비스 (메뉴)		
카테고리	판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등심카레밥상	명란밥상	35,800
	바질밥상	35,800
	토마토밥상	35,800
	스테이크 밥상	37,300
특등심밥상	명란밥상	37,800
	바질밥상	37,800
	토마토밥상	37,800
	스테이크 밥상	39,300
	야끼밥상	37,800
치즈카츠밥상	명란밥상	37,300
	바질밥상	37,300
	토마토밥상	37,300
	스테이크 밥상	38,800
	야끼밥상	37,300
쿠시카츠 밥상	명란밥상	37,300
	바질밥상	37,300
	토마토밥상	37,300
	스테이크 밥상	38,800
	야끼밥상	37,300
카레우동 밥상 (등심)	명란밥상	39,800
	바질밥상	39,800
	토마토밥상	39,800
	스테이크 밥상	41,300
	야끼밥상	39,800

카레우동 밥상 (특등심)	명란밥상	41,800
	바질밥상	41,800
	토마토밥상	41,800
	스테이크 밥상	43,300
	야끼밥상	41,800
카레우동 밥상 (치즈카츠)	명란밥상	41,300
	바질밥상	41,300
	토마토밥상	41,300
	스테이크 밥상	42,800
	야끼밥상	41,300
카레우동 밥상 (쿠시카츠)	명란밥상	41,300
	바질밥상	41,300
	토마토밥상	41,300
	스테이크 밥상	42,800
	야끼밥상	41,300
크림카레우동 밥상 (등심)	명란밥상	39,800
	바질밥상	39,800
	토마토밥상	39,800
	스테이크 밥상	41,300
	야끼밥상	39,800
크림카레우동 밥상 (특등심)	명란밥상	41,800
	바질밥상	41,800
	토마토밥상	41,800
	스테이크 밥상	43,300
	야끼밥상	41,800
크림카레우동 밥상 (치즈카츠)	명란밥상	41,300
	바질밥상	41,300
	토마토밥상	41,300
	스테이크 밥상	42,800
	야끼밥상	41,300
크림카레우동 밥상 (쿠시카츠)	명란밥상	41,300
	바질밥상	41,300
	토마토밥상	41,300
	스테이크 밥상	42,800
	야끼밥상	41,300
정식	등심카츠 정식	14,700
	특등심카츠 정식	16,700
	쿠시카츠 정식	16,200
	치즈카츠 정식	16,200
	철판 큐브 스테이크 정식	18,800
	함밤 스테끼밥	15,200
면요리	오꼬노미야끼 파스타	13,800
	프레시 바질 파스타	15,800
	일본풍 토마토 파스타	15,800
	명란 크림 파스타	14,800
	큐브스테이크 오일 파스타	18,800

카레	크림카레 우동	12,500
	카레우동	11,000
	등심+카레우동	15,000
	특등심+카레우동	17,000
	치즈카츠+카레우동	16,500
	토끼정 카레	10,500
	등심+토끼정 카레	15,200
	특등심 +토끼정 카레	17,200
	치즈카츠+토끼정 카레	16,700
	쿠시카츠+토끼정카레	16,700
	큐브 스테이크 카레	16,800
덮밥	스테이크 덮밥	17,300
	갈비맛 삼겹 덮밥	13,500
	매콤한 고기 덮밥	11,500
	반밥덮밥	13,200
토끼밥	스팸소보로밥	3,500
	날치알 토끼밥	3,500
	후리카게밥	1,500
사이드	쿠시카츠 추가_ 등심	3,500
	쿠시카츠 추가_ 닭	3,500
	쿠시카츠 추가_ 표고	3,000
	쿠시카츠 추가_ 연근	2,500
	쿠시카츠 추가_ 가지	2,500
	쿠시카츠 추가_ 파리	2,500
사이드	산더미 양배추 샐러드	5,500
	춘두부 크림치즈	6,800
	간장 닭튀김	8,700
	바게트 2조각	1,000
토끼하이볼	토끼하이볼	6,500
	유자 하이볼	7,000
	석류 하이볼	7,000
	얼그레이 하이볼	7,000
토끼소다	청순청포도	5,800
	달빛유자	5,800
	노을석류	5,800
	아기사과	5,800
	청초매실	5,800
탄산음료	얼음가득 콜라	3,000
	레몬동동 사이다	3,000
	제로콜라	3,000
맥주	클라우드 생맥주	4,000

[푸드코트형]

(2024.04.01.기준)

메뉴라인	판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	-----------	-------------

호로록 면 요리	날치알 크림 우동	11,300
	크림 카레 우동	11,000
	돈까스 카레 우동	10,700
	명란 크림 파스타	11,300
	나폴리탄 함바그 파스타	11,300
살포시 올린 올린밥 요리	오무카레밥	10,700
	- 돈까스 1조각	3,300
	- 함박 1조각	3,000
	매콤한 삼겹뎡밥	10,700
	갈비맛 삼겹뎡밥	11,900
만인의 연인 '고기' 요리	함밤스테끼-밥	14,900
	숯불구이반반+후리가케밥	15,400
토끼밥	후리가케밥	1,000
소다	콜라	2,500
	사이다	2,500
	미란다(오렌지)	2,5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일반인에게 일본 가정식, 가정식, 일식, 일본식 주류, 일본식 칵테일 등을 판매하는 업종	토끼정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및 방법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1. 특수상권인 경우	특수상권 내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2. 특수상권 아닌 경우	<p>일반적인 경우 : 점포소재지 기준 약 반경 300m</p> <p>1. 경계선은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2. 계약체결시 · 계약체결 이후 본 가맹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영화관, 휴게소, 할인점, 지하철, 병원, 학교, 관공서, 호텔, 리조트 등 집객시설과 상주인원 1,000명 이상의 독립 집합건물(빌딩, 사무실, 오피스텔 등)등의 특수상권이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의 영업지역과 무관하여 직영점 입점 및 타 가맹점 개설이 가능합니다.</p>	

3)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토끼정』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일반 소매점	CU편의점	명란 크림파스타	완제품 판매
		토끼정 고로케, 카레우동, 토끼정 햄계란마요 삼각김밥, 토끼정 카레가츠정식, 토끼정 고구마무스고로케	완제품 판매 및 가맹점 메뉴와 상이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	-------	----	------	----------

온라인	11번가	www.11st.co.kr	카레돈가츠 소스, 통등심가츠,통모짜치 즈가츠	온라인 판매, 완제품 판매	
	cj몰	http://display.cjmall.com/			
	G마켓	www.gmarket.co.kr			
	Hmall	https://www.hmall.com/			
	sk스토아	http://www.sksto.com/index			
	만개의 레시피	https://www.10000recipe.com/			
	오늘의집	https://ohou.se/			
	이지웰	가입 기업 전용 도메인			
	제이티(티몬2)	http://www.tmon.co.kr			
	카카오	https://www.kakaocorp.com/page/			
	티켓몬스터	https://www.tmon.co.kr/			
	푸드압	http://www.foodyap.co.kr/			
	사자마켓	https://www.saja.market/	통등심가츠, 통모짜치즈가츠		
	신세계	http://shinsegaemall.ssg.com/			
	옥션	http://www.auction.co.kr/			
	올웨이즈	https://alwayz.co/			
	이마트몰	http://emart.ssg.com/main.ssg?Egnb=embi			
	공구마켓 (제이슨그룹)	https://m.market09.kr/home			
	GS이숍	https://gsshop.com/			통모짜 치즈가츠
	현대몰	https://www.hmall.com			카레돈가츠 소스, 토끼정 통등심가츠
GS홈쇼핑	https://www.gsshop.com/	통모짜 치즈가츠			
NS홈쇼핑	https://www.nsmall.com/				
신세계 라이브쇼핑	https://www.shinsegaetvshopping.com/	통등심 가츠, 통모짜 치즈가츠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 영업표지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60.77%	39.07%	0%	0.16%

※ 직전 사업연도(2023년도)말 기준 폐업한 가맹점과 직영점의 매출은 제외하고 산정하였기에 위 표에 기재된 비중과 실제 비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2.36%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 『토끼정』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법」 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가맹계약서 조문
1. '가맹점'은 최초 가맹계약기간 2년 종료 후 갱신하려는 경우 매 갱신 때마다 계약 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갱신 가입비 금 이백만원(₩ 2,000,000원 / 부가세별도)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해당 계약기간동안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 갱신가입비는 면제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2. 가맹계약서 제35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전체 계약기간(최초 가맹계약기간부터 갱신 계약기간을 모두 포함한 계약기간) 10년 만료 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은 계약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갱신 가입비 금 오백만원(₩ 5,000,000원 / 부가세별도)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

3. 가맹계약서 제35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전체 계약기간 (최초 가맹계약기간부터 갱신 계약기간을 모두 포함한 계약기간) 10년 만료 후 갱신한 다음부터는 5년마다 '가맹점'은 계약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갱신 가입비 금 오백만원(₩ 5,000,000원 / 부가세별도)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제3호
4.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당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 하에 특별약정의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갑'이 '을'에게 갱신 가맹계약서 작성 요청을 하지 않아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35조 제1항 제5호
5. '가맹점'은 '가맹본부 등'(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포함)에 대한 물품대금, 로열티 미수금, 대여금, 계약이행 미납금 등 모든 채무를 '가맹본부 등'(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포함)에게 전부 변제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제6호
6. '가맹점'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및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매장의 노후시설이나 설비의 보수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전일까지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제7호
7.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운영 시스템이나 디자인 등의 변경으로 영업표지 및 인테리어 일부가 변경되었을 경우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 및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계약 종료 전일까지 변경 완료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제8호
8. 기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가맹본부'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제9호
9. '가맹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품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35조 제1항 제10호
10. '가맹점'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적인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제2항 제1호
11.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제2항 제2호
12.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5조 제2항 제3호
13.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14.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15.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하셨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하셨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하셨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셨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셨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그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문서에 의한 합의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를 예고하였더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상기 예고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당사가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귀하가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날 60일 전에 서면으로 당사의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제 36조 3항)

1. '가맹점'이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가맹점'이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3. '가맹점'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7.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홀 매출, 배달 등의 매출 금액을 누락·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8.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본부를 양도하는 경우
9.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에게 물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10.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이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가 정하는 물류공급 중단 사유 (가맹계약서 제 22조 1항)]

7일 전 서면 예고 후 미 시정 시 물품공급 중단 사유

1. '가맹점'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2.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3조 제1항(가맹점의 표시)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
4.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5.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실시하는 필수 교육, 경영지도 등을 계약기간 내 이수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가맹점'이 경업을 하거나 '을'의 직원 등을 통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8. '가맹점'이 물품대금, 로열티, 광고·판촉비 등의 대금지급을 연체하거나 '가맹점'의 채무가 보증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9. '가맹점'이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10. '가맹점'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11. '가맹점'이 노후 된 점포설비의 교체·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2. '가맹점'이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품을 변경·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상품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가맹점'이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15. '가맹점'이 제21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6.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7.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각종 매뉴얼 기준에 따른 관리 기준을 계약기간 내 위반하거나 당사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8.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9. '가맹점'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20.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점포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1.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홀 매출, 배달 등의 매출 금액을 누락·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22.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23. 기타 본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36조 4항)
1.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귀하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6. 귀하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 7. 귀하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처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

[당사가 정하는 물류공급 즉시 중단 사유 (가맹계약서 제 22조 2항)]

물품공급 즉시 중단 사유
1. '가맹점'이 파산한 경우
2. '가맹점'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처리 되는 경우
3. '가맹점'이 강제집행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물품공급을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가맹점'이 제3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양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추가 작성된 것은 문서는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 상속에 필요한 절차

1)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에 교육비 금오백오십만원(₩5,500,000/부가세 포함)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육비의 경우 [토끼정] 가맹점을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교육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당사는 교육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환매	불가능	-	환매제도 운영 안함
양도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상속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 의사 통지→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교육비 부담 및 개점 전 교육 이수→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 양도양수 시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조건

- ☞ 귀하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의 승인 후 점장 등을 고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경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대리경영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대리 경영
위탁경영	불가능	-	-

※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또한, 영업 중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 ☞ 귀하는 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토끼정]과 동종의 영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경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 1년 6개월 동안은 [토끼정]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점포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토끼정]과 동종의 영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경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일반인에게 일본 가정식, 가정식, 일식, 일본식 주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

일본식 칵테일 등 당사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취급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	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

8.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30 ~ 22:00	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연속하여 5일 이상 무단 휴업 불가

※ 단, 위와 달리 푸드코트형 매장의 경우 백화점 등이 지정한 영업시간, 영업일수를 따라야 합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를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다만, 귀하의 직접 근무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자율	자율	종업원 수는 매출액에 따라 상이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또는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당사의 정책 준수 여부, 당사가 정한 상품 취급 여부, 당사가 정한 필수공급품목 취급 여부, 원부재료 품질기준 준수 여부, 매장 위생 및 청결 상태, 각종 설비 관리 상태, 기타 가맹점 매뉴얼 규정 등 가맹점 운영 현황 전체	담당자 매장 방문 또는 유무선 연락→관리내역 점검→상담일지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서명 또는 통지→완료	방문 또는 유·무선 등을 통하여 월 1회 이상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가맹본사가 추진하는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10%	총 광고비의 90%	광고기획 →가맹점사업자 부담분 산정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분담금통지서 발송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사전약정 또는 광고행사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상품광고, 브랜드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병행광고)	총 광고비의 10%	총 광고비의 90%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100%	총 광고비의 0%		
가맹본사가 추진하는 판촉 전체 행사	할인행사	총 판촉비의 10%	총 판촉비의 90%	판촉 기획 →가맹점사업자 부담분 산정 →가맹점의 판촉 참여 여부 결정 → 분담금통지서 발송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사전약정 또는 판촉행사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10%	증정상품 출하가 90%		
	팸플릿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10%	판촉물 제작비용 90%		
	기타 전체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해당 없음		-	-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표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가 정하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은 계약 및 경영상에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상의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이고 계약 종료 후에도 이해관계인 및 기타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맹점"의 가족, 종업원, 기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이들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가맹점"이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가맹점"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
3.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레시피, 교육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4. "가맹점"과 "가맹점"으로부터 비밀을 획득한 이해관계인 또는 기타 제3자는 이러한 비밀정보를 활용하여 "토끼정" 가맹사업을 파괴 또는 저해, "토끼정" 가맹사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맹점"이 제24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가맹점"은 그로 인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손해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 또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이 가맹계약서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반하여 당해 가맹점 점포에서 '토끼정' 사업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이 '가맹본부'과 가맹계약 체결 이후 가맹점 개점 이전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에는 가맹계약서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정해진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남은 금원을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반환한다.
- ④ '가맹점'이 '가맹본부'가 정한 구입강제품목을 자점매입(사입)하거나 가맹계약서 **제19조(구입강제품목의 지정과 공급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이 가맹계약서 **제21조(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이 가맹계약서 **제26조**를 위반하여 임의적으로 양도한 경우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가맹점'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해지하는 경우와 가맹계약서 **제36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를 위반하여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임의중단 또는 폐업처리하거나 [토끼정] 영업표

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최근 1년간 월평균 매출액의 10%에 가맹계약기간의 잔여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⑧ '가맹점'이 가맹계약서 제29조(비밀유지 의무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⑨ '가맹점'이 계약의 종료 후 가맹계약서 제37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은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 금삼십만원(₩300,000원)씩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⑩ '가맹본부'는 위약금 · 위약벌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금액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할 수 있고 위약금 또는 위약벌 등을 넘는 손해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손해의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⑪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64㎡(약80평)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당사 전체 시공 시	약 80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4)번 항목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8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제공	D-79~70(10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필요시 실시	
최종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66(1일)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65(1일)	
교육진행	- 점포운영교육 실시	D-60(6주)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시공비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55~45(10일)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주방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D-44~4(40일)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 초도물품 입고	D-3(2일)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 개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 상담, 점포 선정, 임대차 계약, 가맹계약 체결 등의 소요시간과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당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지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 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 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 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부담	문의: 지원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 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 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 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지원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여부
개점 전 교육	회사소개, 주방요리방법, 점포운영의 노하우, 고객응대 서비스교육 등	이론 및 실습교육	개점 전일	필수
개점 후 교육	본사정책 안내, 제품 품질관리 교육, 제품 평가회 등	실습교육	추후 공지	필수

※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1개월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필수)
개점 후 교육	추후 공지	165 (1인 1일 기준)	숙박비·교통비 등의 실비 별도

※ 교육일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 모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 귀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부산	신세계부산센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센텀시티몰 4층
2	서울	서울역사점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122-11, 서울역
3	서울	롯데본점(명동점)	서울시 중구 을지로 30, 롯데백화점 지하 1층
4	경기	AK&기흥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 63, 기흥AK& 3층
5	충남	신세계충청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A관 5층
6	서울	용산아이파크몰점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아이파크몰 6층
7	경기	동탄타임테라스	경기 화성시 동탄중앙로 220 동탄 타임테라스 상가 A동 206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5년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275,107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 1] 토끼정 필수 식자재 및 원부재료 등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3]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